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대통령령 : 제22211호

공포일자 : 2010. 6. 18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02-2110-5475)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전기공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부 령 : 제131호

공포일자 : 2010. 6. 24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02-2110-5475)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사업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 부 령 : 제2010-517호
예고기간 : 2010. 6. 9~29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02-2110-6207)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개정이유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소유권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설계자 및 감리자는 지질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지질 및 기반기술사중에서 선택적으로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시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 (1)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결만 있으면 되나 건축법령에서는 구분소유자의 100퍼센트의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2)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권리 확보 기준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권리 확보 기준의 모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 개선

- (1)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건축허가 처분이 선행되어야 무상양여 등이 가능하여 건축허가 전에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로 국·공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3)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규제완화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재해위험지역내 건축신고 서류 보완

- (1)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신고시 제출서류가 배치도와 평면도로 간소화 되어 있어 경사지등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구조안전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신고시 건축허가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3)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기준 개선

- (1) 설계자 및 감리자는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 토목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 지반인 경우 토목기술사만으로 정확한 지반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 설계자 및 감리자는 지질조사등 토목공사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토목기술사 외에 지반 및 기반기술사를 추가함
- (3) 지질구조가 복잡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정확한 지질조사 및 분석이 가능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개정안내

법 률 : 제10348호

공포일자 : 2010. 6. 8

담당부서 : 기술표준정책과(02-509-7221)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개정이유

현행법은 산업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호 간에 업무의 연계가 미약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나 재인증을 위한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산업표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 또는 인증 취소를 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업체는 인증표시가 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인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산업표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후단 및 제22조제2항 신설)

나.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안 제22조제4항 신설)

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 부 령 : 제142호
공포일자 : 2010. 6. 24
담당부서 : 소방장비과(02-2100-5385)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42호, 2009. 7. 27 공포·시행)되어 소방시설사업자가 소방산업 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하는바, 담보제공액 등을 소방시설공업의 시공능력 평가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소방시설공업체의 자본 충실을 유도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 대통령령 : 제2010-181호
예고기간 : 2010. 6. 23 ~ 7. 13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02-2110-7417)
전문참고 : 노동부(www.molab.go.kr)

- 개정이유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이내에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토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구체적 적용시기, 급여수준 및 상향계획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여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명시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적용
- 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 특례 규정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 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근거 마련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 질의) 참여사업명 : "0000아파트 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용역"으로 표기되었음

- 직무분야 : 전기
- 참여분야 : 주거시설
- 담당분야 : 공사감리
- 담당업무 : 상주감리(책임)

•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용역이라는 계약서상의 계약이름을 그대로 경력으로 올리셨다고 하십니다.

• 이럴 경우..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의 감리원 경력 평가시 용역명에 의한 세가지 부분(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전기부분경력을 정상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PQ고시 [부표 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서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전기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참여사업명이 "○○아파트 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용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직무분야(전기), 담당업무(상주감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사항을 포함한 다른 평가요소도 향후 PQ평가 시 다른 업체의 이의제기 등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경력관리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 5)

• 2006년에 수의로 계약한 지방의 주상복합인데요 전기감리원의 변경이 있어 신고절차 문의 드립니다.

• 보통 입찰이 아닌 수의로 계약한 경우는 시·구청에 상관없이 전력기술인협회에 바로 신고를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감리인 경우는 시·구청에 통보를 하는데 전기, 통신, 소방분야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상에 별도로 나와 있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를 포함)에는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치신고의 접수업무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감리원의 배치신고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이며,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주상복합은 별도로 시·구청에 통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8. 8. 7)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 평가 항목중 참여 감리원의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산정 기간의 20%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이때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20%를 적용함에 있어, 참여상주 감리원의 경력산정시 비상주 감리 경력의 참여일수에 20%를 적용하는 것인지, 참여비상주 감리원의 경력산정시에도 비상주 감리경력 참여일수에도 같은 20%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즉, 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적용되는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을 20%로 산정하는 것"이 참여상주 감리원의 경력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참여비상주 감리원의 경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4 선박기관사(해기사)의 경력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에 따라 인정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고시) [부표 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을 20%로 산정하는 것은 당해 PQ평가에 참여하는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즉, PQ에 참여하는 모든 감리원이 종전에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이 있었다면 그 경력기간에 대하여 20%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지사설에 대한 비상주감리원의 참여기간이 429일 경우
 : 429(환산율은 100%)×20% = 85일(소수점 이하 절사)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 19)

•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으며, 제1호가목의 "전력시설물"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박기관사(해기사)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경력산정기준 제1호가목에서 정한 "전력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한국전력기술협회 회원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 5)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위증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 그 거짓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글 _ 박중복 변호사

Q 토지소유권 문제로 A와 오랫동안 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였다. 소송 당시 A측의 증인으로 나왔던 B를 위증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한다면 패소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

A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절차가 종료되면 당사자와 법원은 그 판단을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재심제도이다.

그런데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엄격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위 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는 증인 등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우선 B가 위증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B의 거짓진술부분이 없었더라면 재심대상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재심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B를 위증죄로 형사고소한 뒤 검사가 B를 위증죄로 기소하고 법원이 B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B의 거짓진술이 없었더라면 당초의 확정판결의 주문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당초의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하는 B를 형사고소하기 이전에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승소가능성 여부를 냉정하게 자문받아 보기를 권한다. ❖